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 4. 12(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3. 2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3. 23

라. 상정일자 : 2010. 4. 6.(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신설되는 위임사무: 11건】

◈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8건)

○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과 등 부서별로 각각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각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보건정책과, 대기보전과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한 사무"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추가·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도로과 (1건)

○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사무를 "차량의 통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정함.

【변경되는 위임사무: 38건】

- ◈ 교육지원담당관실 (1건)
 -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개정함.
- ◈ 회계계약심사과 (3건)
 - 시유일반재산 매각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는 매각 가액 범위 없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각각 위임함.
- ▶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 (34건)
 -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 및 위임사무명을 정비함.

【삭제되는 위임사무: 21건】

- 위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16건)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권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에 관한 권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가스충전 사업에 관한 권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업에 관한 권한",「전기사업법」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방치선박 등의 제거" 사무가 군수·구청장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각각 삭제함.

◈ 보건정책과 (5건)

○ 「의료법」개정에 따라 "의료보수의 신고" 사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소관 부서 내 사무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3건】

- ◈ 교통관리과(삭제) ⇒ 대중교통과(신설)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와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각각 조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개정안은

○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 법규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 ○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군수·구청장 등에게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되는 위임사무는

- (안 4쪽, 6쪽)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주무과인 사회복지봉사과로 통일하여 위임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본 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각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 (안 8쪽, 9쪽) 보건정책과의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개정과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이며,

대기보전과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관리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의 위임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개정 및「소음·진동규제법」의관련 조항에 의거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7쪽, 8쪽) 도로과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사무와 종합건설본부의 "과적차량 단속" 사무를 일원화하여 도로관리 효율성을 제고코자 도로과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유지보수·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여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로관리의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타 광역시 운영사례>

시별	구 분	제한차량 운행허가	과 적 단 속	전담 행정인력	시행부서
인천	시청	0	×	허가 -2 명	도로과
인선 	종합건설본부	×	0	단속-21명	도로관리팀
부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0	0	허가-4명 단속-20명	관리과
대구	건설관리본부	0	0	허가-2명 단속-11명	시설안전과
대전	건설관리본부	0	0	허가-1명 단속-2명(공익10명)	시설관리과
٥. ٨١.	종합건설본부	0	0	허가-1명	시설과
울산	5개 군, 구	0	0	허가-군,구별 각1명 단속-군,구별 각1명	건설과
광주	종합건설본부	0	0	허가-1명 단속-10명	관리과

○ 변경·삭제 및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는

- (안 제7쪽) 직속기관장으로의 위임사무중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 사항」은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변경하는 것임.
- (안 제4쪽, 6쪽, 8쪽) 회계계약심사과의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처분 관련 사항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처분 매각가액을 상향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산처분 위임권을 군・구・경 제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 및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업무가 교통관리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조정되어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임.

□ 이번 조례 개정은

- 행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 등은 불가피하게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위임사무를 군·구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 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수행가능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위임사무가 예산이 수반되는지?
 - 위임된 조례의 업무가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답 변>

-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음.
 - 조직개편, 사무위임조례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4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복지봉사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노인정책과란의 제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나.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0조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같은 법 제11조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별표 1 중 여성정책과란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별표 1 중 아동청소년과란의 제4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아동청소년 과란)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별표 1 중 노인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보건정책과란 및 위생정책과란을 각각 보건정책과란, 위생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및 노인정책과란으로 한다.

별표 1 중 위생정책과란을 삭제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2호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세18조제2항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1조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별표 1 중 에너지정책과란의 제3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8조

별표 1 중 교통기획과란 및 대중교통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교통관리과란의 제16호란을 삭제하며, 도로과란의 제1호 파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3"을 "같은법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 중 항만공항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해양수산과란의 제5 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복지봉사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노인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나.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0조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같은 법 제11조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별표 2 중 아동청소년과란 앞에 여성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아동청소년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아동청소년과란)에 제 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	--

별표 2 중 노인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보건정책과란 및 위생정책과란을 각각 보건정책과란, 위생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및 노인정책과란으로 한다.

별표 2 중 위생정책과란을 삭제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1조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별표 2 중 에너지정책과란의 제3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8조

별표 2 중 대중교통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교통관리과란의 제1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도로과란의 제1호 파목 및 제4호 사목 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2 중 항만공항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해양수산과란의 제5 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실과별란 중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하고, 도로과란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 령 제24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란(도 로과란)의 제1호란의 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도로과란)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차량의	「도로법」제59조	종합건설	
	운행허가 등 (도로폭원에 관계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본 부 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5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의 제2호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 미만인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 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별표 5 중 보건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5호 다목의 "인·허가등의 재제"를 "인가·허가등의 의제"로 하며, 에너 지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5호 란 및 제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	같은 법 제66조제1항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8조
8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	「전기사업법」제92조

별표 5 중 도로과란 제1호란의 타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 2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의 제10호 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환경정책과란)의 제17호란의 가목의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제4항"을 "「야생동·식물보호법」제73조제4항"으로 한다.

1	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환경
		영향평가법」제14조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업자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라. 초안공고시 설명회개최사항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요청 수리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5 중 대기보전과란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음・진동규제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소음・진동규제법」제8조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제17조, 제18조,
	이행보고 및 확인	제20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47조
	라. 청문	같은 법 제51조
	마. 과태료	같은 법 제60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회계계약	1	지유재산의 관리처 가. 시유일반재산 1) 가액 1억원 및 재산의 최종차 처분관련사항 2) 「도시 및 주거화 주거환경개선시 시환경정비사 나. 시유일반재산	·의 매각 토지면적 분결정권· 환경정비법」 업・주택지 업구역내	300㎡미만인 을 제외한 제2조에 따른 내개발사업·도 재산의 처분	부터 제43조 같은법 제312 까지, 제44조	€부터 시행량 까지 [€] 부터 부터	제38조 형 제37조 제35조 제47조	
					까지, 제81조 같은 법 시행 제29조부터 제81조	령 저]26조,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	「사회복지시	-업법 ₋	」제51조	
교 통기획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가. 부과 및 징수 나. 가산금 부과 다. 각종대장 기독	및 징수	구의 권한	「도시교통 ⁷ 제36조 같은 법 제40 같은 법시행)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 시설사용료의 인가 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 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아. 터미널 사용명령 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2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항만공항 정 책 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 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	고
회계계약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심사과		제14조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부터 제43조까지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	
		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	
장애인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복지과			
여 성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정책과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중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교통과		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제38조	
		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같은 법 제39조	
		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 신고	같은 법 제40조	
		라. 시설사용료의 인가	같은 법 제41조	
		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같은 법 제42조	
		중지 및 시정명령		
		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같은 법 제43조	
		변경인가 및 신고		
		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아. 터미널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같은 법 제48조	
		합병신고		
		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같은 법 제48조	
		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같은 법 제48조	
		또는 신고		
		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같은 법 제79조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 인에 대한		
		질문		
		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등 행정처분	제94조	
	2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같은 법 제83조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기, 기계과 기계 첫 70기		
	3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용자에 관한 보고 검사	제79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항만공항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정책과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61조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1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정책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라.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	
		마.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같은 법 제27조	
		바. 의료지도원 임명 같은 법 제69조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84조	
	2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의료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같은 법 제51조	
		라. 의료법인 설립등기 등의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바. 임원 선임의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사. 재산의 증가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자.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차. 해산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3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정책과		가. 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나.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	같은 규칙 제4조	
		다. 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	같은 규칙 제2조	
		라. 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	같은 규칙 제4조	
		마.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같은 규칙 제4조제3항	
		사용중지 등의 사무		
	4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약사법」제45조	
		가. 한약업사의 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다.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라. 허가증의 갱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바.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사.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약사법」제50조	
	5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가. 개설 등록	「약사법」제20조	
		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	
		다. 의약품 조제 승인	같은 법 제23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신고	같은 법 제41조	
	6	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약사법」제69조	
		나.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회수 등 사실공표	같은 법 제72조	
		마.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바.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정책과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아. 청문	같은 법 제77조
		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78조
		차.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7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제14조
		다.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같은 법 제15조
		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법 제16조
		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18조
		바. 응급의료 대불비용 보조	같은 법 제22조
		사. 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	같은 법 제22조의2
		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 법 제26조
		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 법 제29조
		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같은 법 제30조
		카. 당직의료기관 지정	같은 법 제34조
		타.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파. 구급차 말소・등록	같은 법 제45조제2항
		하. 구급차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거.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
		너. 이송업 휴업 등 신고	같은 법 제53조
		더.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같은 법 제54조
		러.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5조제2항
		머. 청문	같은 법 제56조
		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8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정책과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	같은 법 제8조제2항	
		재개업 신고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무능력 자가 집	같은 법 제8조제3항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마약류 관리자 제외)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같은 법 제26조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같은 법 제40조	
		거. 출입·검사와 수거 Ā	같은 법 제41조	
		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더.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머. 청문	같은 법 제45조	
		버.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서.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역	임 조례		개정사유	
	[j	l표 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	임하는 사항		71/8/17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회</u>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m'미만)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제38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u>회</u>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m'미만인 재산 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정 비구역내 금액구분 없이 채산처분권 위임 자구수정	
			_〈신 설〉	I	<u>장애인</u> <u>복지과</u>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노 인 정책과	<u>1</u>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나.무연고 시체의 처리 다.무연분묘의 처리 라.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마.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 사설납골시설 설치자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 징금 처분	법률」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8조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나.무연분묘의 처리 다.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법률」제8조 같은법제28조 같은법제20조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자구수정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2	사설묘지·화장장·납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설묘지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u><</u> 소사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형 행					 개 정	<u></u>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
	[1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1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약	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
		나.사설화장장 또는	동법 제14조							
		납골시설의 설치신고								
		다.묘지·화장장 또는 납골	동법 제22조							
		시설의 폐지 등								
		라.이전 및 허가 취소 등 의 조치	<u>동법 제26조</u>							
		마.검사와 보고	동법 제32조							
		바.법인묘지, 사설화장장	<u>동법 제21조</u>							
		또는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료 신고								
		사용표 현디표 신포	 〈신 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시회복지시업법」		국(局)
			<u>\u u/</u>			_ 5	지도감독	제51조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신 설〉		여 성	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국(局)
					<u>정책과</u>	_	지도감독	제51조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아 동	<u>4</u>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_〈삭 제〉_			관련법
청소년과		권한	Farman							개정 (군 · 구
		<u>가. 입장료 · 이용료의</u> 징수 승인	<u>「아동복지법」</u> 제17조							사무)
		0100	<u> </u>							
			제12조제1항							
		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장	제12조제2항							
			<u> 〈신 설〉</u>			<u>5</u>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u> 지도감독	<u>「사회복자사업법」</u>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세기조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T								
<u>위 생</u>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u>〈삭 제〉</u>			관련법 개정
정책과		근 이 에 는 법이	<u>제2항</u>							(군 • 구
기 업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사무) 관련법
지원과	_	관한 법률」에 의한				=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 - '		다음의 권한					가.승강기의 운행정지			
		가.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u>명령</u>	안전관리법_		
		대한 운행정지 명령	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4항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제18조제2항 가의 번 제21조		
		나.승강기의 운행정지					대한 보고 및 검사	트디 및 세설조		
		<u>명령</u>	<u>제2항</u>				다.승강기 관리주체에	<u>같은 법 제28</u> 조		
			<u>동법 제21조</u>				대한 과태료			
		소속공무원의 검사								
		라.승강기 관리주체에	<u>동법 제28조</u>							
		대한 과태료								

		현 행					개 정 '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11 -21 -11 -0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에너지	<u>3</u>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u>〈삭 제〉</u>			관련법 개정
정책과		판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 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 제3호 동법 제38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9조제3항 동법 제41조제1항							(군·구 사무)
	4	에 대한 중지명령 등 차.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나.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4	나.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법」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관런법 개정
	<u>5</u>	다.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라.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허가	<u>동법 제100조</u>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8조		관련법 개정 (군 · 구 사무)
		나.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유
	[년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1/3/FTT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교 통</u>	<u>1</u>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교 통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관련법
기획과		다음의 권한			기획과		다음의 권한			개정
		가.부과 및 징수	「도시교통정비				가.부과 및 징수	「도시교통정비		
		나.가산금 부과징수	촉진법」제18조					촉진법」제36조		
		다.각종대장 기록관리	같은법 시행령				나.가산금 부과 및 징수	<u>같은 법 제40조</u>		
			제29조제1항				다.각종 대장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u>대 중</u>	<u>1</u>	여객자동차터미널에			<u>대 중</u>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련법
교통과		관한 다음의 권한	선계기도키ㅇ스		교통과		관한 다음의 권한	「みかわたう」の人		개정
		<u>가.공사시행의 인가, 변</u> 경인가, 인가기간연장,					<u>가.공사시행의 인가,</u> 변 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1 H H 7 1100-11				공사완공 시설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동법 제40조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u>같은 법 제39조</u>		
		<u>및 사용개시 신고</u>					<u>및 사용개시 신고</u>			
		다.터미널사업자의	<u>동법 제41조</u>				다.터미널사업자의	<u>같은 법 제40조</u>		
		<u>사용약관신고</u>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u>마.터미널사업자의</u> 준수사항 위반시	<u>동법 제43조</u>				<u>마.터미널사업자의</u> 준수사항 위반시	<u>같은 법 제42조</u>		
		중지 및 시정명령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동법 제45조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같은 법 제43조		
		구조 · 설비의 변경					구조 · 설비의 변경			
		<u>인가 및 신고</u>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u>동법 제46조</u>					<u>같은 법 제44조</u>		
		<u>명령</u>					<u>명령</u>	-1 0 11 11 15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					아.터미널 사용명령			
		양수 및 법인의	<u> 중립 세30조</u>				<u>자. 터미널사업의 양도ㆍ</u> 양수 및 법인 의	<u> </u>		
		합병신고정처분					합병신고			
		차.터미널시업의 상속신고	동법 제50조				차.테일 성속신고	같은 법 제48조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동법 제50조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하가 또는 신고					및 폐기 허가 또는 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u>동법 제71조</u>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u>같은 법 제79조</u>		
		명령, 장부서류 기					명령, 장부・서류,			
		<u>타 물건의 검사, 관</u> 계인에 대한 질문					<u>그 밖의 물건의 검사,</u>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동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부과 등 행정처분			

		현 행						안		
	Г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Г	인천광역시 사무위인			개정사유
실과별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위임사무명		ы –	실과별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위임사무명	1	비고	
실파별	번호	취임사구병	근거법규	비끄	설파별	번호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근거법규	미끄	부서간
						2	관한 다음의 권한			업무조정
							가.유상운송허가 및	「여까자		
							임대허가	사업법」제81조		
							나.사용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3조		
							금지명령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교통	<u>16</u>	자가용자동차사용에					<u>〈삭 제〉</u>			부서간 업무조정
관리과		관한 권한	[_]-] -] [-]							月1五.0
			「여객시동차 운수 사업법」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금지명령	EC B MILE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5조							
ran	1									ਹੀ 24 14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관련법 개정
		20m이하인 도로								
		(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타. (생략)	(생략)				 가.~타.(현행과 같음)	(혀해과 간은)		
		파.도로공사계획의					파	1		
		공고	제24조의3					제29조		
		하.~도. (생략)	(생략)				하.~도.(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체육	1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구미체우지중비				 _〈삭 제〉_			관련법
<u>세 파</u> 진흥과	<u> </u>		제10조				<u> </u>			개정
60-1		지도감독	<u> </u>							(군 · 구
		<u> </u>	<u>제17조</u>							사무)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유
	[1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인]하는 사항		1/1/8/17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근거법규	비고	
환 경	<u>5</u>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u>5</u>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련법
정책과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정비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	 「수도권 대기화경				기	 「수도권 대기화경		
		기간의 연장・검사					기간의 연장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유예 및 검사명령	제25조,					제25조, 같은 법		
			같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0조		
			제29조, 제30조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u>표지 교부</u>	같은 법 시행규칙		
		<u>표지 교부</u>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같은법 시행규칙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제38소		
			<u>제 30조</u> 같은법 제46조 및							
		-1.01011312 1 21 01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u>항</u> 만	<u>1</u>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u>항</u> 만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관련법
<u>공</u> 항		다음의 권한			<u>공 항</u>		다음의 권한			개정
<u>정책과</u>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		<u>정책과</u>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38조					사업법」제55조		
			제1항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u>같은 법 제56조</u>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동법 제39조							
	9	최무기도카 O 스 시 어머니	「취미기도키 ㅇ스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취미기도키 0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2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u>사업법」세44조</u>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u>가.보고</u>					<u>가.보고</u>			
		나.검사 및 질문					나.검사 및 질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		
	_	유가보조금의 신청·접수,				_	유가보조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제2항, 제45조제3항				지급 등에 관한 권한			
			-, , ,,5							
해 양	<u>5</u>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u>〈삭 제〉</u>			관련법
수산과			제13조							개정
										(군·구 사무)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역	임 조례		ر اد ادارد اد ادارد
	[별표 2] 군수에게 위임	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회</u> 계 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m'미만)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37 조		<u>회</u> 계 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m'미만인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정 비구역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u>〈신 설〉</u>		<u>장애인</u> <u>복지과</u>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u>지도감독</u>	제36조까지, 제8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노 인 정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나.무연고 시체의 처리 다.무연분묘의 처리 라.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마.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 사설납골시설 설치자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 징금 처분	법률」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30조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나.무연분묘의 처리 다.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법률」제8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0조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자구수정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u>2</u>	사설묘지·화장장·납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설묘지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u><</u> 삭 제>			관련법 개정 (군 · 구 사무)

		현 행					개 정	<u></u>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인] 조례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히	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	하는 사항]개성사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나.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4조							
		다.묘지·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의 폐지 등								
		라.이전 및 허가 취소 등 의 조치 마.검사와 보고	<u>동법 제26조</u>							
		<u>바.법인묘지, 사설화장장</u> <u>또는 사설 납골시설의</u>	<u>동법 제32조</u> <u>동법 제21조</u>							
		사용료·관리료 신고	<u>〈신 설〉</u>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지화복자시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u>〈신 설〉</u>		<u>여 성</u> <u>정책과</u>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지희복자시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아 동청소년과	2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입장료・이용료의 정 수 승인 나.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장	「아동복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u>〈삭 제〉</u>			관련법 개정 (군 · 구 사무)
			<u>〈신 설〉</u>			<u>5</u>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자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u>위</u> 생 정책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제2항				<u>〈삭 제〉</u>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기 업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나.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다.관리주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라.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제4항 동법 제18조 제2항 동법 제21조 제2항제3호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다.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대료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1조		관련법 개정

		<u>현</u> 행						개 정	}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	천광역시 시	·무위임	조례 조례		-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히	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 계	에 위임	하는 사항		- 개성사표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	근거법-	규 비고	
실 에 너 지 정 책 과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 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라. 과정금 부과 및 징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38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40조 동법 제40조	<u> </u>	실과별			위임사무명 제〉_			ボー 刊立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u>4</u>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에너지관리대상자의에너지사용량 신고접수 나.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다.에너지관리대상자 및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대한 보고의 명령 및검사 라.위임사무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검사 라.위임사무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라.위임사무에 대한 고대로의 부과・징수 「전기사업법」에 의한다음의 권한가.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허가나.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허가	법」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 제100조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			4	에 관 가.검/ 선 나.에 걸 다.위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사대상기기설 한 보고의 <u></u>	권한 종자의 기승인 남자 및 설치자에 명령 및 대한	법 제40조 같은 법 제6 제1항	제 <u>4항</u> 66조	관련법 개정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혀 행					 개 정 '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N -1 -1 A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히					[별표 2] 군수에게 위임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대 중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 중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련법
교통과		관한 다음의 권한			교통과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	<u>여객자동차운수</u>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	「여객시동차 운수		
		경인가, 인가기간연장,	사업법 제39조				<u>경인가,</u> 인가기간연장,	사업법」제38조		
		<u>공사완공 시설 확인</u>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	<u>동법 제40조</u>				나.사용개시기간의 지	<u>같은 법 제39조</u>		
		<u>정 및 시용개시 신고</u>					<u>정 및 사용개시 신고</u>			
		다.터미널사업자의	<u>동법 제41조</u>				다.터미널사업자의	<u>같은 법 제40조</u>		
		<u>사용약관신고</u>					<u>사용약관신고</u>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동법 제42조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u>같은 법 제41조</u>		
		마.터미널사업자의	<u>동법 제43조</u>				마.터미널사업자의	<u>같은 법 제42조</u>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규모,	<u>동법 제45조</u>				바.터미널의 위치,규모,	<u>같은 법 제43조</u>		
		<u>구조 · 설비의 변경</u>					<u>구조·설비의 변경</u>			
		<u>인가 및 신고</u>					<u>인가 및 신고</u>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u>동법 제46조</u>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u>같은 법 제44조</u>		
		<u>명령</u>					<u>명령</u>			
		아.터미널 사용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u>동법 제50조</u>					같은 법 제48조		
		양수 및 법인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합병신고			
		차.터미널시업의 상속신고					차.터미날사업의 상속신고			
			<u>동법 제50조</u>					<u>같은 법 제48조</u>		
		및 폐지 하가 또는신고	F 13 3 3 5 4 5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1.6 3=0-		
			<u>동법 제71조</u>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u>같은 법 제79조</u>		
		명령, 장부서류 기					명령, 장부・서류,			
		타 물건의 검사, 관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계인에 대한 질문					관계인에 대한 질문	-1 A 11 100 -		
			<u>동법 제79조,</u>					같은 법 제88조,		
		과징금 및 과태료	세83소, 세85소				과징금 및 과태료	제92소, 제94소		
		부과 등 행정처분					부과 등 행정처분			
										Halal
						2	자가용자동차사용에			부서간
							관한 다음의 권한			업무조정
							가.유상운송허가 및	िवयगङि रिन		
							임대허가	사업법」제81조		
							나.사용의 제한 및	<u>같은 법 제83조</u>		
							<u>금지명령</u>			
							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н ч-1
						3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부서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u>운수사업법」</u>		업무조정
							대한 보고 검사	제79조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인천광역시 사			개정사유
	_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히					[별표 2] 군수에게			/ 10 111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교 통 관리과	_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_〈삭 제〉_			부서간 업무조정
	8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권한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과태료 부과 및 장수	업법 제7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74조				<u>〈삭 제〉</u>			부서간 업무조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하인 도로 (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타. (생략) 파.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하.~도. (생략)	(생략) <u>같은법</u>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 법 시행령</u> 제29조 ·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4	공고 아.~저. (생략)	(생략) <u>같은법 시행령</u> 제24조의3 (생략)				사 아.~저.(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u> 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같음) (현행과 같음)		관런법 개정
체 육 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u>〈삭 제〉</u>			관련법 개정 (군 · 구 사무)

		 현 행					 개 정	<u></u>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인]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혀	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	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환 경 정책과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 기간의 연장·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수도권 대기환경 개산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HI.		4	지금사구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수도권 대기환경 개산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법 정비
<u>항</u> 만 공 항 <u>정책과</u>	<u>1</u>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업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3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		<u>항</u> 만 공 항 정책과	<u>1</u> <u>2</u>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		관련법 개정
해 양 수산과	<u>5</u>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u></u> 현 행					 개 정 '	<u></u>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	王 4]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세게 위임하는 사			4]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에게 위임하는 시	·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기획담</u> 당관실	1	(생략)	(생략)	(A)	교육지 원담당 관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취 감)	조직개편 에 따른 개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20m를 초과하는 도로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나. (생략) 다.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라.~자. (생략) 차.차량의 통행 제한 (과적차량 단속)	(생 략) <u>같은법 시행령</u> 제24조의3 (생 략) 같은법 제59조	종합 건설 변 창				<u>같은 법 시행령</u> 제29조		관련법 개정 7호시무로 통합
	2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강화, 옹진 제외) 가.~나. (생략) 다.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라.~자. (생략)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생략) <u>〈신</u> 설〉	종합 건설 본장		7	 라.~자. (현행과 같음)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u>같은 법 시행령</u> 제29조 (현행과 같음)	<u>종합</u> 건설	관련법 개정 사무의 일괄처리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	임 조례		-1) -1 >) O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l 위임하는 사항		I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	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계 객실사과 보절책과	2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바. (생략) 사.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m'미만) 아.~니. (생략)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와 검사 나.업무개시명령 등 라.검사명령 마.개수명령 바.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사.청문 아.과징금 처분 자.과태료 부과・징수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생략) 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동법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약사법」제69조 제1항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13조의 같은법 제14조		보 건 정책과	1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일반재산의 매각 1)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m'미만인 재 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산시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재산의 처분 아. ~ 너.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나.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다.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지도와 명령 마.무면허의료행위 등단속 바.의료지도원 임명 사.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현행과 같음) 같은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같은법제59조 같은법제59조 같은법제59조 같은법제69조		공시자마른 시장하여 일위하여 한 문원 한 문

		<u></u>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11 -21 -11 -0				
[부	且亚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거	l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보 건 정책과		마.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바.응급의료 대불비용보조 사.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 아.권역응급의료센타 지정협의 자.전문응급의료센타 지정협의 차.당직의료기관 지정 카.읍급의료기관 지정 카.읍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타.응급차 말소ㆍ등록 파.응급차 기도감독 하.영업정지 등 거.청문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2조의2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3조		보 건 정책과	2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의료법인의 설립	「의료법」제48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 같은법제49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관련법 개정 (경제자 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 · 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u>6</u>	너.이동합 항집 중세신고 의약품도매상에 관한 사항 가.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나.허가사항등의 변경 허가 신청등 다.폐업등의 신고	_ 「약사법」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3	자.합인사구의 검사・ 감독 차.해산신고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u>7</u> <u>8</u>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개설하가 및 시항변경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한약업사의 허가 나.한약업사의 영업소					나.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 다.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 라.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 마.특수의료장비의 양도 (耶), 사용중지등의사무	같은 규칙 제4조같은 규칙 제2조같은 규칙 제4조같은 규칙 제4조		
		<u>이전</u> 다.허가증의 갱신 라.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4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한약업사의 허가 나.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다.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제57조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1	豊 班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거	l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9	마약류 도·소매업자,	_				라.허가증의 갱신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법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제86조제3항		개정 (경제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관리에				마.허가사항 등의 변경			유구역의
			관한 법률」				<u>허가 신청 등</u> 바.폐업 등의 신고	<u>제88조</u> 같은 법 시행규칙		사무처리
		9/2/ 24/9	제6조제1항제3호				지,에 비 이어 단포	제89조제1항		특례
		나.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사.의약품 판매 점포			-군수 · 구청장
		다.허가증 등의 교부	같은법 제7조제2항				이외의 장소 승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중
		및 재교부						특별법」제27조 및		시장
		라.마약류취급자의 폐업・	같은법 제8조제2항					「약사법」제50조		직접수행 사무),
		<u>휴업ㆍ재개업신고</u>	기 () 비 -네이크 -네이코			<u>5</u>	약국에 관한 다음의	「경제자유구역의		위임조항
		마.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권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정비
		변기해한 경우신고	<u> </u>				 가.개설 등록	「약사법」제20조		
		바.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같은법 제10조				나.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		
		(미약류도매업 제외)						같은 법 제23조		
		사.사고마약류의 처리					라.약국제제의 제조신고	<u>같은 법 제41조</u>		
		아.자격상실자의 마약류	같은법 제13조			6	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u>처분</u> 자.마약류도매업자	같은법 제26조			$\overline{\Omega}$	관한 다음의 권한			
		마약 등의 판매 승인	트트립 제20조				가.보고와 검사	「약사법」제69조		
			같은법 제27조				나.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카.마약의 소매보고	같은법 제29조				다.폐기명령 등	<u>같은 법 제71조</u>		
			같은법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마약류 인계인수	-1 4 22 30=-				마.검사명령	<u>같은 법 제73조</u> 같은 법 제74조		
			<u>같은법 제37조</u> 같은법 제40조				<u>바.개수명령</u> <u>사. 허가취소 및 업무</u>			
		<u>이.마약ㅠ 중곡자의</u> 치료보호	<u> </u>				정지 등	EC 8 71102		
		거.출입·검사와 수거	같은법 제41조				<u>아.청문</u>	같은 법 제77조		
		• •	같은법 제42조				자.약사감시원 임명 등			
			같은법 제43조				차.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러.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카.과태료 부과 및	<u>같은 법 제98조</u>		
			같은법제45조				<u>징수</u>			
	10	<u> </u>	같은법제46조		-	7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	다음의 권한					전 반 가.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우급이로에 과하		
		가. 특수의료장비등록	「특수의료장비의				운영	법률」제13조의3		
		사무	설치 및 운영에				나.구조 및 응급처치에			
		, = , , , , , , ,	관한 규칙」제2조				관한 교육			
		나. 특수의료장비시설	같은 규칙 제4조				다.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등록사항 변경사무 다. 특수의료장비공동	간으 규치 제9ス				라.응급의료기관에 대한	<u>같은 법 제16조</u>		
		<u>의용사무</u>	EL 117 71142				<u>재정지원</u> <u>마.다수의 환자발생에</u>	간으 번 제1 9 조		
							마른 조치	트드 표 /배10조		
							바.응급의료 대불비용 보조	같은 법 제22조		
							사.대불금 등에 대한			
							<u>자료제공</u>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Γ		개정사유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	근거법규	비고		
- 16	C	라.특수의료장비인력		1	- 1-		아.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6조	100	관련법	
		등록사항 변경 사무	_				지정협의			개정 (경제자	
		마.특수의료장비의	같은 규칙 제4조				자.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u>같은 법 제29조</u>		유구역의	
	11	<u>양도(폐기) 사무</u> 의료지도원 임명등	<u>제3항</u> 「의료법」제69조				차.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같은 법 제30조		사무처리 특례	
	111	122 12 6 10 0	- 122 6] 110022				카.당직의료기관 지정			-군수 ·	
	12	약사감시원 임명 등	「약사법」제78조				타.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파.구급차 말소·등록			구청장 사무 중	
		7 1 1 2 1 0 0					하.구급차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시장	
							거.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직접수행 사무),	
							<u>너.이송업 휴업 등 신고</u> 더.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위임조항	
							<u>러.영업정지 등</u>	같은법제55조제2항		정비	
							머.청문	같은 법 제56조			
							<u>버.과징금 부과 및 징수</u> 서.과태료 부과 및 징수				
						8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EC B MOZZ			
							다음의 권한				
							가.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u>다.허가증 등의 교부</u>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라.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				
							<u>마.마약류취급자가 사망</u> , 무능력자가된 때 및	같은 밥 세8소세3양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u>바.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u> 사.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아.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마약류 관리자 제외)				
							<u>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u> 등의 판매 승인	<u>같은 법 제26조</u>			
							차.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u>타.마약류관리자의 마</u> 약류 인계인수	<u> </u>			
							파.허가 등의 제한	<u>같은 법 제37조</u>			
							하.마약류 중독자의	<u>같은 법 제40조</u>			
							<u>치료보호</u> 거.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주			
							너.폐기 명령 등	<u>같은 법 제42조</u>			
							<u>더.업무보고 등</u>	<u>같은 법 제43조</u>			
							<u>러.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u> 머.청문	<u>같은 법 제44소</u> 같은 법 제45조			
							버.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서.과태료	<u>같은 법 제69조</u>			

		<u></u> 혀 헷					개 정	ό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기 경 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Г	増豆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1	개정사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기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기 업	5	공장설립등의 승인,	C T II II	-					조문정비			
지원과		등록에 관한 사무										
' - '		가.~나. (생략)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인ㆍ허가등의	(생략)				다. 인가ㆍ허가 등의					
		지제 개제	(67)				의제 의제	(00) ED/				
		<u>계계</u> 라.~더. (생략)	(생략)				<u></u>	(처체고 가스)				
에너지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94)				(식 제)	(한행의 원리)	관련법			
정책과	<u>+</u>	및 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u>\ </u>					
1894									개정			
		권한							(군 · 구			
		○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권한	Fall-1210-12 A						사무)			
		가.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u>안</u> 라리 및 사업법」									
			제3조									
		나.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다.허가취소 등의 처분										
		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마.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u>동법 제40조</u>									
		바.안전관리자의 채용・	<u>동법 제16조</u>									
		해임 신고수리										
		사.안전관리규정 검토	<u>동법 제12조</u>									
		및 변경명령										
		아.위임사무에 대한	동법 제52조									
		과태료 부과· 징수										
		자.허가관청 등의 조치	동법 제29조									
		차.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동법 제21조									
		카.보고와 조사 등	<u>동법 제38조</u>									
	<u>5</u>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_			<u>5</u>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가.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가.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에 자)용 합리화법 _				
		에너지 사용량 신고접수	법」제25조제1항				선임기간 연기승인	제40조제4항				
		나.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동법 제59조제4항				나.에. 자관리대상하 및 검사	같은 법 제66조				
		선임기간 연기승인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제1항				
		다.에.가만라다.하 및 검사	동법 제89조제1항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u> </u>				다.위임사무에 대한	같은 법 제78조				
		보고의 명령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 및					
		라.위임사무에 대한	돌변 제100조				<u> </u>					
		과태료부과·징수	<u>8日列100工</u>				01					
	8	「전기사업법」에 의한				8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전기사업법」	관련법			
	0	토지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º	허가	제92조	개정			
		가.공공용 토지의 사용	 「정기사언벌」				<u> </u>	,,,,,,,,,,,,,,,,,,,,,,,,,,,,,,,,,,,,,,,	/ 11 0			
		허가	제92조									
		<u>역가</u> 나.타인의 토지 등에의										
			<u> </u>									
		<u>출입허가</u>	토비 케이크 케이카									
		다.타인의 토지위의	중립 세89소세2앙									
		<u>공중의 사용</u>										
								-				

현 행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11-11-1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개정사유				
실과별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근거법규 비고	
도로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관련법
		권한							개정
		가.~카. (생략)	(생략)				가.~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타.도로공사계획의	같은법 시행령				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9조	
		파.~도. (생략)	(생략)				파.~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체육	10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국민체육진홍법				〈삭 제〉		관련법
진흥과		폐지, 변경, 보고 및							개정
			같은법 시행령						(군 · 구
		100 11	제17조						사무)
환 경	1	평가서초안에 대한	<u> </u>			1	평가서초안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관련법
정책과		다음의 권한	_ 환경교통계등에 관			_	다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개정
0 111		가.평가서 초안의 접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법제27조및 환경	
		/1.0/11上记引 日1	제6조제1항					영향기법 제4조	
		 나.사업개요.공람장소.					<u>가.평가서초안의 접수</u>		
		공람기간 등에 대					<u>/1.78///12-2-1 181</u>	제13조제1항	
		<u>한 공고 및 초안</u>					나.사합!요공공소공람 간		
		공람 초안요약서의	<u>^ 3 8</u>				<u> </u>		
		정보 통신망 게시					<u> </u>		
		다.의견 접수 및 제출,	가이버 치체점				조건 6 점 조건 요구 시기 정보통신망 게시		
								가 이 비 기체터	
		<u>사업자통지</u> 라.초안공고시 설명회	<u>제7조</u> 가이비 기체크				다.의견 접수 및 제출,	제16조	
							사업자통지 라.최당과 설명 개최		
		개최사항 포함	<u>세8조</u>						
		요청수리	가이비 기체크				시항 포함 요청수리		
		마.공청회 일시 및					마.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공청회 개최결과					바.공청회 개최결과		
		<u>접수</u>	제9조제5항				<u>접수</u>	제18조	
		사.공청회개최여부					사.공청회개최여부		
	1/7		제9조제6항				<u>협의</u>	제18조	조문정비
	17	위임된 권한에 대한							조판성미
		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Elair airean	
		가.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				가	<u> </u>	
		-1 -1 (1) =1-1	법」제73조제4항					제73조제4항	
~l))		나.~바. (생략)	(생략)				나.~바. (현행과 같음)		ਹ ਸ਼ੀ ਸੀ
대기			<u> 〈신 설〉</u>			9	「소음·진동규제법」에	「경제자유구역의	관련법 개정
보전과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및운영에관한	(경제자
							리 제 축 시 시 시 - 기 = 기	<u>특별법」제27조</u>	유구역의
							가.배출시설의 설치	<u>「소음・진동</u>	사무처리
							신고 및 허가 등	규제법」제8조	특례
							나.개선명령, 조업정지	<u>같은 법 제15조,</u>	-군수·
							명령 등, 허가의 취소		구청장
							등, 폐쇄조치 등,	제18조, 제20조	사무 중
							이행보고 및 확인	71 A 11 7 17 -	시장 직접수행
							다.보고와 검사 등	<u>같은 법 제47조</u>	사무)
							라.청문	<u>같은 법 제51조</u>	
							<u>마.과태료</u>	<u>같은 법 제60조</u>	